2022년 민간위탁사업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
민간위탁 사무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증보고서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목 차

검증보고서 1

별첨 I. 검토결과 요약 2

별첨 II. 세입세출 내역 3

별첨 III. 지적사항 8

별첨 IV. 권고사항 9

민간위탁 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서울특별시장 귀중

우리는 ㈜임팩트스퀘어의 2022년01월0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의『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의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정산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임팩트스퀘어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의 책임은 동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본 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검증하였으며, 우리가 수행한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수탁협약서, 사업계획 및 예산과 대비한 집행내역의 적정성(목적 외 사용금지) 검토
- 민간위탁사무 관련 결산서류 및 세부 집행내역(증빙서류)의 적정성 검토

또한 본인은 검토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상기 2022년01월0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임팩트스퀘어 의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등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위탁사무와 관련된 집행금액 1,212,676,314원 중 불인정 금액은 0원이며, 후원금, 사업수입 및 사업외수입을 포함한 총 반납 금액은 107,687,533원입니다.

2023년 03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11
우리회계법인
대표이사 김병익



본 보고서는 첫 번째 문단에서 언급된 목적 및 서울특별시의 정보제공 용도로만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제3자에게 배포되거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사업비 집행내역서에만 관련 될 것이며 『㈜임팩트스퀘어』의 전체 재무제표로 확대될 수 없습니다.

별첨 I. 검토결과 요약

1. 개요

(단위: 원)

위탁사무명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위탁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수탁기관**	㈜임팩트스퀘어
위탁유형	시설형	**정산기간**	2022.01.01 ~ 2022.12.31
예산액	1,090,388,800 (1,423,780,595*)	**예산서 승인일**	2022-01-12
회계직원 재정보증 보험가입여부	가입	**회계관리시스템 명**	서울시 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자체수입 유무	유		

* 2021년 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대상액인 130,978,591원 포함

2. 사업비 정산요약

(단위: 원)

재원	예산액(A)	수납액 (교부액)(B)	집행액(C)	집행잔액 (D=B-C)	불인정액(E)	차년도 이월액 (F)	총 반납액 (D+E-F)
민간위탁금	1,090,388,800	1,090,388,800	1,033,197,723	57,191,077	-	-	57,191,077
사업수입	56,583,204	49,724,264	-	49,724,264		-	49,724,264
후원금	145,500,000	145,500,000	48,500,000	97,000,000	-	97,000,000	-
사업외수입*	131,308,591	131,750,783	130,978,591	772,192	-	-	772,192
합계	1,423,780,595	1,417,363,847	1,212,676,314	204,687,533	-	97,000,000	107,687,533

*2021년 정산에 따른 반납대상액 130,978,591원이 2022년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액C에 포함)

3. 검토결과

1) 총 반납금액

위탁사무와 관련된 집행액 1,212,676,314(C) 중 불인정금액(E) 은 0원이며,사업수입 49,724,264원 및 사업외수입 772,192원을 포함한 총 반납금액(D+E-F)은 107,687,533원입니다.

2) 결산서상 인건비명세서와 인건비 집행내역의 대사

본 수탁법인이 제출한 결산서상 인건비 계상금액과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기타의견

자세한 사항은 별첨 III. IV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II-1. 세입세출 내역(전체)

1. 세입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수납액	미수납액
사업수입	시설사용료수입	시설사용료수입	56,583,204	49,724,264	6,858,940
소계			56,583,204	49,724,264	6,858,940
사업외수입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130,978,591	130,978,591	-
	잡수입	잡수입	-	406,450	- 406,450
	이자수입	이자수입	330,000	365,742	- 35,742
소계			131,308,591	131,750,783	- 442,192
위탁금 및 보조금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1,090,388,800	1,090,388,800	-
	후원금	SH공사	48,500,000	48,500,000	-
		한국자산관리공사	97,000,000	97,000,000	-
소계			1,235,888,800	1,235,888,800	-
합계			1,423,780,595	1,417,363,847	6,416,748

2. 세출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인건비	인건비	기본급	248,516,560	229,695,663	18,820,897
	수당	제수당	146,542,740	129,504,775	17,037,965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32,921,600	32,879,492	42,108
	사회보험부담금	사회보험부담금	41,042,580	35,290,150	5,752,430
소계			469,023,480	427,370,080	41,653,400
물건비	일반운영비	사무용품비	1,258,000	1,254,865	3,135
		도서인쇄비	1,277,000	1,271,480	5,520
		급량비	576,000	-	576,000
		건물관리비	198,726,000	198,726,000	-
		보증보험료등	375,200	304,390	70,810
		복리후생비	560,000	556,960	3,040
		비품구입및시스템구축	7,818,800	7,818,800	-
		공공요금및수용비	21,513,180	20,873,148	640,032
		시설장비유지관리비	8,235,600	8,229,900	5,700
		교육비	3,060,000	2,764,000	296,000
		운영수당	5,183,000	3,671,650	1,511,350
	여비	출장비 및 여비	4,780,000	1,619,600	3,160,400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3,900,000	3,868,127	31,873
소계			257,262,780	250,958,920	6,303,860
제안사업비	성장지원사업	엑셀러레이팅	181,861,400	178,795,793	3,065,607
		판로지원사업	104,776,600	101,143,860	3,632,740
		아카데미사업	12,430,000	12,092,720	337,280
		제안사업비(SH공사)	48,500,000	48,500,000	-
	홍보 및 인식개선	홍보 및 인식개선	50,090,000	49,013,203	1,076,797
소계			397,658,000	389,545,576	8,112,424
예비비 및 기타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14,944,540	13,823,147	1,121,393
	차기이월	후원금	97,000,000	97,000,000	-
	반환금 및 기타	민간위탁금반환금	56,913,204	107,687,533	- 50,774,329
		민간위탁금반환금(전년도이월금)	130,978,591	130,978,591	-
소계			299,836,335	349,489,271	- 49,652,936
합계			1,423,780,595	1,417,363,847	6,416,748

***코로나19손실보전금**

항목	예산편성액	집행액	잔액
코로나19손실보전금	-	-	-

별첨 II-2. 재원별 세출 내역

1.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비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인건비	인건비	기본급	248,516,560	229,695,663	18,820,897
	수당	제수당	146,542,740	129,504,775	17,037,965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32,921,600	32,879,492	42,108
	사회보험부담금	사회보험부담금	41,042,580	35,290,150	5,752,430
소계			469,023,480	427,370,080	41,653,400
물건비	일반운영비	사무용품비	1,258,000	1,254,865	3,135
		도서인쇄비	1,277,000	1,271,480	5,520
		급량비	576,000	-	576,000
		건물관리비	198,726,000	198,726,000	-
		보증보험료등	375,200	304,390	70,810
		복리후생비	560,000	556,960	3,040
		비품구입및시스템구축	7,818,800	7,818,800	-
		공공요금및수용비	21,513,180	20,873,148	640,032
		시설장비유지관리비	8,235,600	8,229,900	5,700
		교육비	3,060,000	2,764,000	296,000
		운영수당	5,183,000	3,671,650	1,511,350
	여비	출장비 및 여비	4,780,000	1,619,600	3,160,400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3,900,000	3,868,127	31,873
소계			257,262,780	250,958,920	6,303,860
제안사업비	성장지원사업	엑셀러레이팅	181,861,400	178,795,793	3,065,607
		판로지원사업	104,776,600	101,143,860	3,632,740
		아카데미사업	12,430,000	12,092,720	337,280
	홍보 및 인식개선	홍보 및 인식개선	50,090,000	49,013,203	1,076,797
소계			349,158,000	341,045,576	8,112,424
예비비 및 기타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14,944,540	13,823,147	1,121,393
	반환금 및 기타	민간위탁금반환금	-	57,191,077	- 57,191,077
소계			14,944,540	71,014,224	- 56,069,684
합계			1,090,388,800	1,090,388,800	-

***코로나19손실보전금**

항목	예산편성액	집행액	잔액
코로나19손실보전금	-	-	-

별첨 II-2. 재원별 세출 내역

2. 자체수입금(사업수입)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 및 기타	민간위탁금반환금	56,583,204	49,724,264	6,858,940
소계			56,583,204	49,724,264	6,858,940
합계			56,583,204	49,724,264	6,858,940

별첨 II-2. 재원별 세출 내역

3. 후원금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제안사업비	성장지원사업	제안사업비(SH공사)	48,500,000	48,500,000	-
소계			48,500,000	48,500,000	-
예비비 및 기타	차기이월	후원금	97,000,000	97,000,000	-
소계			97,000,000	97,000,000	-
합계			145,500,000	145,500,000	-

별첨 II-2. 재원별 세출 내역

4. 사업외수입

(단위: 원)

관	항	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 및 기타	민간위탁금반환금	330,000	772,192	- 442,192
		민간위탁금반환금 (전년도이월금)	130,978,591	130,978,591	-
합계			131,308,591	131,750,783	-442,192

별첨 III. 지적사항

1. 불인정사항

본 사업에 대한 불인정사항은 없습니다.

2. 기타 지적사항

본 사업에 대한 기타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별첨 IV. 권고사항

1)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비

(1) 사업소분 주민세

본 수탁기관은 사업소분 주민세 62,500원을 공공요금및수용비로 예산편성하여 집행하였는 바, 원칙적으로 사업소분 주민세는 수탁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위탁금을 재원으로 사업소분 주민세 지출이 가능함을 협약서 명시하였거나, 또는 일반관리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에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서에 명시하거나 일반관리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실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